

2022년 서울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소기업 대상 사업화 역량 강화와 서울지역의 산업·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예산** : 총 863백만원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150백만원+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713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세부사업** :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에 대한 고도화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 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 한도)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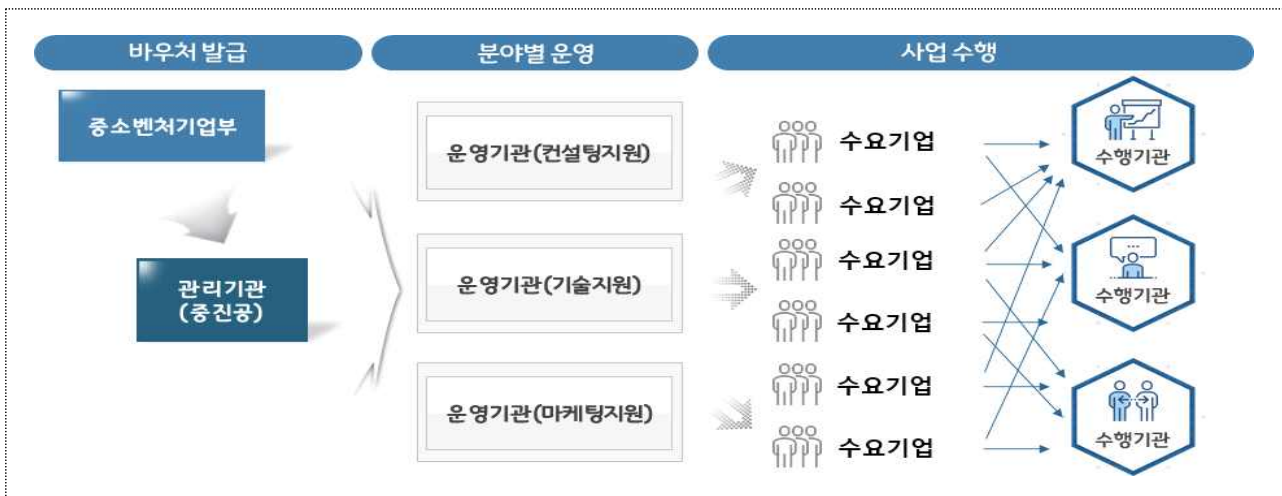
- 서울지역 4대 미래성장산업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분야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

* 기술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한도)

2. 관련규정 및 운영체계

□ 관련규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2022.6)

□ 운영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역별 사업공고, 지원기업 선정 등
- (관리기관(중진공)) 운영기관 관리, 수요기업 신청·접수 및 서면·현장 평가, 사업비 집행·관리,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
- (운영기관) 서비스 분야별 사업 운영, 수행기관 관리
- (수행기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수요기업)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지원규모) 예산 150백만원
-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 최종 선정된 업체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분야	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한도
컨설팅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경영·영업전략, 구조 개선)	50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케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가능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원규모) 예산 713백만원

○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③ 4대 미래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별첨4)

-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술이 접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우대

○ (지원내용) 기술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복수 지원 가능)

<세부 지원내용>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4.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22. 7. 4 ~ 7. 22

-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해당 내용 상세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⑨		시제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납품계약서 등)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에 한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서비스(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하여 제출(단, 대표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스캔본 별도 업로드)
 - * 원클릭서비스(중소기업지원플랫폼)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 (mssmiv.com)에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 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는 법인·개인('19년, '20년, '21년) 제출
-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⑨)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별첨 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에 기재한 시제품 판매실적 및 거래처 확보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업로드

□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신청시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추진일정 및 평가절차

□ 추진일정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지방중기청 개별공고 게시	혁신바우처 플랫폼	평가 및 지역별 위원회	관리기관 및 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7.1	7.4 ~ 7.22	7.25 ~ 8월	~ 9월 초	9월 중순 ~

□ 평가절차 : 서면심사 → 현장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분야별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정
- (현장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
 -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진행되므로, 신청분야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최종 발급되는 추천서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가능 (분야당 2개)

6. 바우처 이용절차 안내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2자협약 및 바우처 발급	- 관리기관-수요기업 협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수요기업, 중진공
↓		
프로그램 매칭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메뉴판 선택	수요기업
↓		
3자협약	- 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간 3자계약	협약 참여기관
↓		
과제수행	- 수행기관-수요기업 공동 수행	수행기관, 수요기업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수행기관 → 수요기업, 운영기관 제출 - 수행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물 검토(완료점검)	수행기관, 운영기관
↓		
사업비 지급	- 완료점검위 적정성 검토·승인 - 부가세 입금 여부 확인 등	중진공(본사)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7. 문 의 처

구 분	연락처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지역 자율형 바우처	중진공 서울지역 본·지부(관할 구역별) - 서울지역본부 : 02-2106-7455 - 서울동남부지부 : 02-2023-4313 - 서울북부지부 : 02-769-6414
원클릭서비스 이용문의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02-3771-1100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장상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 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

바우처사업 참여연도	제품명	
제품 출시일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제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거래처 확보현황 (최대 3개사)	거래처명	매출액(단위 : 천원)
신청일 현재 사업화 진행현황	과거(2020~2021년)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한 시제품 제작 성과 및 프로그램 참여완료 이후 추가적인 사업화 진행경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 허위 기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 (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과거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결과와의 연관성,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백만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백만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건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2년						'23년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명	연도	직위	기관명	휴대전화	직위	비고
경력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장상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 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4대 미래성장산업과의 연관성

<p>기업의 주력 생산품 및 업종이 사업 공고문의 4대 미래성장산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산업분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설명</p>
<p>※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p>

5-2. DNA 기술 접목과의 연관성

<p>기업의 주력 생산품이 DNA 기술과 접목되어 있다면 접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업의 주 생산품 등을 기재하여 설명 (DNA 기술과 관련 없을 시 작성불요)</p>
<p>※ 허위 기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p>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 (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

6-2.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3.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4.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5.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백만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백만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 (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90%), 3억원~10억원(80%), 10억원~50억원(70%), 50억원~120억원 (5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지방청 개별 공고문 참고

8. 추진일정

신청분야	'22년							'23년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명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연 도	직 위	기 관 명	휴대전화	비 고
경 력	~				
	~				
기타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별첨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불가하다.

별첨3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19년 ~ '21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19년 이전 설립기업	- '19년, '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19년 설립	- '20년, '21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0년 설립	- '21년 매출액
'21.1월~'21.11월 설립	- '21년 매출액을 '21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1.12월 설립	- '21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2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18.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1.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1.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4

4대 미래성장산업 업종 분류

산업군	분류 코드	분류명	대표품목
지능형 ICT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휘발성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2	비메모리용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시스템 IC, 모노리식 바이폴라 IC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영상변화관, 영상증강관, 광전관, 수신관
	26310	컴퓨터 제조업	CPU, 기타 중앙처리장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CD드라이브, DVD드라이브, ROM, USB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CRT모니터, LCD모니터, 음극선관모니터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스캐너, 마우스, 컴퓨터용 자판, 바코드 리더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광섬유 전송시스템, 공중전화기, 간이교환전화장치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CCTV, CCTV용 카메라, TV방송용 송신기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무선전화기, 위성 전화기, 안테나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무선 전신기, 무선 전신용 송신기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디지털 텔레비전, TV용 전용부품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DVD 플레이어, 전자식 녹화장치(EVR)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CDP, MP3 플레이어, 광학 녹음장치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이어폰, 헤드폰, 마이크로폰, 확성기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공CD, 공디스켓, CD원판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주위 음파 스캐닝 기구, GPS 수신기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T형 브리지, 가동철편형 기기, 계수기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LCD용 검사장비, 가스측정기, 가정용 습도계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가스계량기, 회전계, 택시 미터기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온도 자동 조정장치, 안전판, 습도 조절장치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습도 측정장치, 압력 측정장치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비광학 현미경,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광섬유, 프리즘, 광학용품, 반사경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마이크로 피시 리더, 환등기, 영사용 스크린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쌍안 확대경, 광학 망원경, 광학 현미경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차전지, RM전지, 농축전지
	28202	축전지 제조업	2차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광섬유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피복 케이블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LAN케이블, OF케이블, 고무절연 전선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가스경보기, 도난방지경보기, 초인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교통 음향 신호장치, 교통 통제용 전기장치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패속 조형장비, 삼차원 프린터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산업용 로봇, 조립공정용 다기능 로봇

산업군	분류 코드	분류명	대표품목
패션·섬유 산업	13101	면 방직업	면사, 면 혼방사
	13102	모 방직업	마모사, 모방직, 섬수모사
	13103	화학섬유 방직업	합성섬유 방직사, 재생섬유 방직사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자수사, 편물사, 견재봉사, 가연사
	13109	기타 방직업	견방사, 마방직, 마사, 코이어사
	13211	면직물 직조업	면직물, 무명
	13212	모직물 직조업	섬수모직물, 소모직물, 혼방모직물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반합성섬유직물, 비닐론직물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거즈직물, 견노일직물, 견방직물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겉이불, 모포, 쿠션, 베개, 침낭, 이불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기계자수 제품, 니트장갑, 수공제품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무대막, 벽덮개, 블라인드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차양, 돛, 천막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직물포대, 플라스틱제 봉재 포대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식탁보, 깃발, 낙하산, 구명벨트, 신발류 끈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니트원단, 뜨개질원단, 메리야스원단
	13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숨, 실 염색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넥타이 염색, 니트원단 염색(표백, 정련 포함)
	13403	날염 가공업	견직물 날염, 날염견직물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단추 구멍내기 가공, 단추짜기 가공, 숨 호부처리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마루덮개, 카펫, 양탄자류, 융단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로프, 밧줄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그물어망, 줄사다리, 물품 운반용 망제품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탄성 세폭직물, 섬유제 직조 라벨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건식 부직포, 공업용 펠트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강력사 타이어코드직물, 고무 가연코드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접착 섬유테이프, 캔버스, 겹직물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각용 섬유제품, 섬유 충전재, 섬유분말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기성양복, 재킷, 점퍼, 청바지, 코트류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기성양장, 드레스, 스커트류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슬립, 브래지어, 코르셋, 거들
	14130	한복 제조업	개량 한복, 민속의상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블라우스, 와이셔츠, 티셔츠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교복, 근무복, 수영복, 체육복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가죽의류(천연, 인조, 재생, 합성 가죽제)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유아용 내의, 유아용 속옷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가운, 교통안전용 야광복, 방수복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 이불, 모피 덮개, 모피 매트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나일론 양말, 타이츠 편조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장갑 및 모자 편조, 머플러 편조
	14491	모자 제조업	가죽모자, 모피모자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가죽벨트, 가죽장갑, 나일론제 스카프

산업군	분류 코드	분류명	대표품목
패션·섬유 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가공가죽, 천연가죽, 모피 가공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가죽제 핸드백, 가죽지갑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트렁크, 악기 케이스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기계용 가죽제품, 가죽 호스, 말채찍
	15211	구두류 제조업	캐주얼화, 정장화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가정용 슬리퍼, 가죽 운동화, 짚신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갑피, 구두굽, 안창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나일론, 폴리염화비닐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레이온 섬유, 셀룰로오스성 섬유
바이오·의료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의약품 화합물, 액티노마이신, 글리코시드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미생물 배양체, 살균소 및 독소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거즈, 구급상자, 냉찜질팩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두통약, 지사제, 진통제, 주사제, 연고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조제 환약, 처방 한약, 한약약품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가축약품, 동물용 약제품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거즈, 구급상자, 냉찜질팩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X-ray 투시용 스크린, X선 탐상기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심전계, 뇌파계, 혈압 측정기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치과용 드릴, 치석 제거기, 치과용 유니트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고정 의치, 골절치료용 기기, 인체 보정기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3D 입체영상용 안경, 가죽제 안경테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검사용 의자, 검사용 테이블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가스마스크, 각막계, 검안기, 고압 산소실
디지털문화 콘텐츠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아케이드 게임기, 전자오락실 게임장비